

의안번호	2125944
의 퇴 인	안규백의원
회 답 일	2024. 1.17.
추 계 번 호	23D495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보상금 등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549억원, 2029년 657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간 총 3,007억원(연평균 601 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범위 확대에 따른 보상금 추가지급(안 제5조제1항제3호)	2,505	2,621	2,742	2,869	3,001	13,738	2,748
독립유공자의 보상금 지급 단서 조항 삭제에 따른 보상금 추가지급 및 위탁병원 지원(안 제12조제2항)	52,343	54,753	57,275	59,914	62,674	286,959	57,392
합 계	54,848	57,374	60,017	62,783	65,675	300,697	60,13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제1항제3호(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이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손자녀의 자녀 중 1명도 승계 대상이 되고,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보고 그의 자녀 중 1명도 승계대상이 되도록 확대함	의무규정
2	안 제12조제2항(보상금)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 구분 및 제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현재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대상자 중 보상금을 받지 않는 선순위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제1항제3호(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2	안 제12조제2항(보상금)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를 최초 등록 기준으로 증손·고손 자녀까지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자녀 1명이 보상금 승계대상이 되어 보상금의 추가 지급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안 제12조제2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 구분 및 제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면, 이 법 제12조의 보상금 이외에 제13조(사망일시금), 제14조(생활조정수당), 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제15조(교육지원), 제16조(취업지원), 제17조제2항(의료지원), 제18조(대부), 제19조(양로지원), 제19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20조(양육지원)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
 - 사망일시금(제13조)의 경우 현행법은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더 이상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였으나, 개정안에 따라 증손·고손 자녀가 보상금을 받게 되면 직계비속의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사망일시금은 지급하지 않게 됨. 따라서 사망일시금 지급 소요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지만 직계비속의 자녀 사망 시 지급해야 할 비용이므로 추가재정소요로 고려하지 않음

- 생활조정수당(제14조), 생활지원금(제14조의5), 교육지원(제15조), 취업지원(제16조), 보훈병원 의료지원(제17조제2항), 대부(제18조), 양육지원(제20조) 등은 현행 규정상에도 이미 지원 대상이므로 본 추계대상에서 제외. 단, 위탁병원(제17조제5항)의 경우 75세 이상인 유가족은 위탁병원 진료대상이므로 추계 대상에 포함함
- 양로지원(제19조)은 최근 10년간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실적이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유족의 범위가 증가된다고 하여도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어 본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범위 확대에 따른 보상금 추가지급(안 제5조제1항제3호)

-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중 손자녀에 대한 단서규정을 ‘최초 등록 당시 이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손자녀의 자녀 중 1명도 승계 대상이 되고,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보고 그의 자녀 중 1명도 승계대상이 된다’로 확대함으로써 증손·고손 자녀까지 보상금 추가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의료지원의 경우 보상금 등 수권자가 사망 후 권리가 다른 자녀로 이전되므로 의료지원대상자의 수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본 추계에서는 보상금 추가 지급 대상자를 추정한 후 여기에 월 지급단가 및 12개월을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
 - (대상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이미 자녀가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손자녀는 [표 2]와 같이 2,443명,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하여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증손은 107명, 고손은 11명으로 이들 2,561명(2,443+107+11) 가운데 사망자

- 가 발생하는 경우 그 자녀 중 1명이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승계대상이 됨
- 본 추계에서는 현재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손자녀 및 증손·고손의 연령별 현황에([표 3]) 통계청 연령별 남자 사망률¹⁾을 적용하여 사망자를 추정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산출
 - 이때, 이들 사망자 모두 증손·고손 등이 있다고 가정하였고, 사망자의 혼격현황을 알 수 없어 혼격별 인원은 [표 5]의 2024년 예산 기준 혼격별 인원 비중을 적용하여 추정

[표 2] 독립유공자 수권자 중 보상금 지급대상 현황

(단위: 명)

	본인	처·자녀·자부	손자녀	증손	고손	합 계
인원수	7	3,892	2,443	107	11	6,460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2023년 11월 기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표 3] 보상금 지급대상자인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증손·고손의 연령별 현황

(단위: 명)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 계
손자녀	3	25	213	587	1,615	2,443
증손	0	2	11	24	70	107
고손	0	0	0	2	9	11
합계	3	27	224	613	1,694	2,561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1세별 현황)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표 4] 개정안에 따른 대상자 추정: 2025~2029년

(단위: 명, %)

	2025	2026	2027	2028	2029
독립유공자 손자녀·증손·고손 중 사망자 추정	127	125	121	118	114

주: [표 3]의 연령별 인원수에 통계청의 남자사망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5] 독립유공자 유족 혼격별 인원 현황: 2024년 예산 기준

(단위: 명, %)

	건국훈장1~3등급	건국훈장4등급	건국훈장5등급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합 계
유족인원수	282	933	2,475	631	2,377	6,698
인원비중(%)	4.2	13.9	37.0	9.4	35.5	100.0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1) 보상금 지급 대상자의 남녀 파악이 안되어 보수적으로 남자 사망률 적용하여 추계

- (지급단가) 최근 5년간 보상금 지급단가 추이는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최근 5년간 증가율 4.6%를 곱하여 향후 단가를 산출

[표 6]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월 지급단가 추이: 2020~2024년

(단위: 천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독립 유공자 훈격	건국훈장1~3등급	2,301	2,370	2,489	2,626	2,757	4.6
	건국훈장4등급	1,917	1,975	2,074	2,188	2,297	4.6
	건국훈장5등급	1,557	1,604	1,684	1,777	1,866	4.6
	건국포장	1,112	1,145	1,202	1,268	1,331	4.6
	대통령표창	743	765	803	847	889	4.6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추가재정소요) 확대되는 보상금 수급 대상자 수에 보상금 월 지급단가 및 12개월을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한 결과 향후 5년간 137억원으로 추정

[표 7]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사망자(명, a)		127	125	121	118	114	
인원비중 (%, b)	건국훈장1~3등급	4.2	4.2	4.2	4.2	4.2	
	건국훈장4등급	13.9	13.9	13.9	13.9	13.9	
	건국훈장5등급	37.0	37.0	37.0	37.0	37.0	
	건국포장	9.4	9.4	9.4	9.4	9.4	
	대통령표창	35.5	35.5	35.5	35.5	35.5	
인원 (명, $c=a \times b$)	건국훈장1~3등급	5	5	5	5	5	
	건국훈장4등급	18	17	17	16	16	
	건국훈장5등급	47	46	45	43	42	
	건국포장	12	12	11	11	11	
	대통령표창	45	45	43	42	40	
월지급단가 (천원, d)	건국훈장1~3등급	2,884	3,018	3,157	3,303	3,455	
	건국훈장4등급	2,403	2,514	2,630	2,752	2,879	
	건국훈장5등급	1,952	2,042	2,137	2,235	2,339	
	건국포장	1,392	1,457	1,524	1,595	1,668	
	대통령표창	930	973	1,018	1,065	1,114	
소요비용(백만원, $c \times d \times 12$)		2,505	2,621	2,742	2,869	3,001	13,7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독립유공자의 보상금 지급 단서 조항 삭제에 따른 보상금 추가 지급 및 위탁병원 지원(안 제12조제2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보상금과 위탁병원 지원 2개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계함

(1) 보상금 지급

- 개정안은 현재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대상자 중 자녀 대에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 보상금을 받지 않는 선순위 손자녀 2,392명에 대하여 새로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보상금 비대상 수권 손자녀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순국선열) 후손으로 다른 선순위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손자녀와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애국지사) 후손으로 현행 법률에 따라 자녀대에서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손자녀로 구분됨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확대되는 보상금 수급 대상자수에 보상금 월 지급단가 및 12개월을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
 - (대상자) 개정안에 따라 확대되는 보상금 수급 대상자수는 2,392명(2023년 11월 기준 보상금 미지급 선순위자 인원, 국가보훈부 제출)으로 추정되며, 동 수치가 추계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손자녀 사망 시 그 다음 손자녀 등으로 승계될 것이므로 사망인원과 신규유입인원이 같다고 보아 현 인원을 추계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표 8]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보상금 대상자(독립유공자 손자녀 수권자로서 현재 보상금 미대상자)의 훈격별 현황

(단위: 명)

	1~3등급	4등급	5등급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합 계
인원수	192	443	994	178	585	2,392

자료: 국가보훈부

- (지급단가) 최근 5년간 보상금 지급단가 추이는 [표 6]과 같이 나타나고, 최근 5년간 증가율 4.6%를 곱하여 향후 단가를 산출
- (추가재정소요) 확대되는 보상금 수급 대상자 수에 보상금 월 지급단가 및 12개월을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한 결과 향후 5년간 2,863억원으로 추정

[표 9]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인원 (a, 명)	건국훈장1~3등급	192	192	192	192	192	
	건국훈장4등급	443	443	443	443	443	
	건국훈장5등급	994	994	994	994	994	
	건국포장	178	178	178	178	178	
	대통령표창	585	585	585	585	585	
월지급단가 (b, 천원)	건국훈장1~3등급	2,884	3,018	3,157	3,303	3,455	
	건국훈장4등급	2,403	2,514	2,630	2,752	2,879	
	건국훈장5등급	1,952	2,042	2,137	2,235	2,339	
	건국포장	1,392	1,457	1,524	1,595	1,668	
	대통령표창	930	973	1,018	1,065	1,114	
소요비용(a×b×12, 백만원)		52,210	54,622	57,145	59,785	62,548	286,31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범위 확대에 따른 위탁병원 지원

- 현재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대상자 중 자녀 대에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 보상금을 받지 않는 선순위 손자녀 2,392명은 개정안에서 단서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새로이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되고, 이에 따라 이들 중 75세 이상자는 위탁병원 진료대상으로 추가 됨
 - 보훈병원의 경우 보상금 등 수권자가 사망 후 권리가 다른 자녀로 이전되므로 보훈병원의 의료지원대상자의 수는 증가하지 않아 진료비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음
 - 위탁병원은 현재 보상금을 지급받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가족의 경우 75세 이상 1인에 대하여 본인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

- (대상자) 개정안에 따라 위탁병원 의료지원 대상으로 추가되는 75세 이상 보상금 미대상 수권 손자녀는 2024년 1월 기준 1,617명으로 여기에 통계청 남자 사망률²⁾을 적용하여 향후 대상자 추정

[표 10] 개정안에 따른 독립유공자 손자녀 수권자(현재 보상금 미대상자) 연령별 현황
(단위: 명)

	30대	40대	50대	60대	70~74세	75세 이상	합 계
연령별 인원	5	23	109	337	301	1,617	2,392

자료: 국가보훈부

[표 11] 개정안에 따른 독립유공자 손자녀 수권자(현재 보상금 미대상자) 중 75세 이상 추정:
2025~2029년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75세 이상	1,542	1,447	1,356	1,271	1,185

주: 연령별 현황자료에 통계청 사망률을 적용하여 추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연간 수진횟수) 위탁병원 연간 수진횟수는 입원, 외래로 구분하여 2022년 기준 수진횟수 입원 1.4회, 외래 2.4회를 적용([표 12] 참조)
- (1회당 진료단가) 위탁병원 진료단가는 입원, 외래로 구분하여 2022년 기준 단가에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표 12] 참조)
 - 입원은 2022년 기준 단가 25,442원에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 7.0% 적용
 - 외래는 2022년 기준 단가 15,366원에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 3.9% 적용

2) 보상금 미대상 수권 손자녀의 남녀 파악이 안되어 보수적으로 남자 사망률 적용하여 추계

[표 12] 75세 이상 보상공금 수령 독립유공자 유가족(60% 감면대상자) 위탁병원 진료현황:
2018~2022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입 원	진료연인원 (명, a)	5,253	10,351	9,047	5,710	5,606	1.6
	의료지원대상자 (명, b)	3,436	3,607	3,773	3,554	3,965	3.6
	1인당 연간수진횟수 (회, a/b)	1.5	2.9	2.4	1.6	1.4	-1.9
	총 진료비 (백만원, c)	102	215	220	139	143	8.7
	1회당 진료단가 (원, c/a)	19,417	20,771	24,317	24,266	25,442	7.0
외 래	진료연인원 (명, d)	12,037	19,397	17,968	9,620	9,681	-5.3
	의료지원대상자 (명, e)	3,436	3,607	3,773	3,554	3,965	3.6
	1인당 연간수진횟수 (회, d/e)	3.5	5.4	4.8	2.7	2.4	-8.6
	총 진료비 (백만원, f)	159	250	255	137	149	-1.7
	1회당 진료단가 (원, f/d)	13,209	12,889	14,192	14,201	15,366	3.9
합 계(c+f)		261	465	475	275	291	2.8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 (추가재정소요) 확대되는 진료대상자 수에 연간 진료횟수 및 1회당 진료단가를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한 결과 향후 5년간 6억 4,900만원으로 추정

[표 13]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범위 확대에 따른 위탁병원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대상자(명, a)		1,542	1,447	1,356	1,271	1,185	
연간수진횟수(회, b)	입원	1.4	1.4	1.4	1.4	1.4	
	외래	2.4	2.4	2.4	2.4	2.4	
1회당 진료단가(원, c)	입원	31,159	33,337	35,667	38,160	40,827	
	외래	17,212	17,876	18,565	19,280	20,023	
소요비용(백만원, a×b×c)	입원	68	68	68	69	68	342
	외래	65	63	61	60	58	307
	합계	133	131	130	128	126	64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오명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73	cecil@assembly.go.kr